

1 공제급여의 종류 및 대상

가. 공제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학안법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나. 공제급여 지급 대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학안법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2 공제급여 청구방법

가. 방법1. 청구서류 학교제출

- 공제급여청구서를 제외한 **라. 제출서류** 제출

나. 방법2. 학부모 시스템 로그인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http://schoolsafe.or.kr>)에 접속 학부모 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제급여청구]화면에서 ①글쓰기 입력 후 ②검색&신규 통하여 공제급여 청구 작성
- ③인쇄 버튼 눌러서 공제급여 청구서 출력 청구인 서명날인
- **라. 제출서류** 공제회로 우편 발송

다. 방법3. 우편발송 및 방문 접수

- 공제급여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라. 제출서류** 첨부하여 우편발송 또는 사무국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 **청구금액 50만원 미만(기본서류)**
①공제급여청구서, ②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 ③청구인 통장사본
- **청구금액 50만원 이상(추가서류)**
①공제급여청구서(학교장직인,청구인서명), ②진단서 원본, ③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공제급여 지급 요건 및 제외 대상

가. 공제급여 지급 요건 ※학안법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 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②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③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④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에 참여한 학부모 등의 사고
- 원인 미상의 식중독 및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학교급식 사고

나. 공제급여 제외 대상 ※학안법 제43조 및 45조(공제급여의 제한,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 교직원 등은「공무원 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
- 자동차 사고, 각종 수련원 사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공제급여 지급기준

[별표] <신설 2012.3.30>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제2조의2 관련)

구 분	내 용
가.선택진료비	<p>1) 선택진료비는 다음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가) 사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요양한 기간</p> <p>나) 사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상병상태(傷病狀態)가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택진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p> <p>2) 선택진료비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나.방사선특수 영상진단료	<p>1) 자기공명영상진단(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1회의 진단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p> <p>가)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p> <p>나) 상병상태가 호전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p> <p>다)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p> <p>2) 초음파 검사료는 진료기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에서 치료상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p>
다.무통주사제	<p>무통주사제 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양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라.화상치료재 등	<p>화상 또는 열상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그 치료재와 치료보조재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마.성형수술비	<p>1) 화상 반흔제거 수술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p> <p>가) 화상 반흔제거 수술은 화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인정한다.</p> <p>나) 인정횟수는 2회 이내로 하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p> <p>2) 사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흉터, 반흔 또는 변형 등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하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p>
바.응급의료 관리료	<p>영 제14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응급의료관리료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사고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한다.</p>

사.물리치료	<p>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리치료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2)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물리치료인 경우
아.치아보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도재전장관(陶材前將冠) 치아보철비는 치아 1대 당 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2회에 한한다. 2) 캐스트코아는 134,000원, 포스트는 124,000원, 레진은 120,000원의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3) 임플란트는 1대 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에 따라 치아보철을 한 경우 임플란트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1) ~ 3) 이외의 보철비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고정장치는 1)에 준하여 인정한다.
자.재활보조기구 및 통합재활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의지(義肢)·보조기·구두·휠체어·목발·보청기·안경·콘택트렌즈·의안·가발·흰지팡이·인공후두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2) 안경과 보청기는 해당 사고 이전에는 착용하지 아니하다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 가액은 시중 상품 중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품질로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한다. 3)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전전동수(筋電電動義手) 배터리의 경우 내구연한을 2년, 휠체어 배터리의 경우는 내구연한을 1년으로 한다. 4) 의지 및 보조기 장착 후 통합재활훈련 대상은 휠체어를 사용 마비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한다.
차.진단서발급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단서는 진료비가 본인부담 진료비(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제외)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제출한다. 다만, 공제회가 공제급여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진료비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출된 진단서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한다.
카.외국체류중에 치료를 하고 요양급여승인을 받은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율의 적용시점은 외국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납부한 때로 하며,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과 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에 대한 요양비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내의 기준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기준에 따른 금액 나) 국내의 기준으로 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비 고

1. 요양급여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가에 따른다.
2.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법 및 영 등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 및 비용 중에서 피공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공제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가 치료 받기 전에 치료비를 지급할 때 중간이자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방식은 호프만식에 의한다.
 - 가.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로서는 치료 불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이후 치료 가능한 경우
 - 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향후에 치료함이 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5 인천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관리시스템 : <http://www.schoolsafe.or.kr>
- 홈페이지 : <http://incheon.ssif.or.kr>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로8번길 23(유성빌딩,3층)
- 연락처 : 032-437-7900
- FAX : 032-431-3808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중간, 최종)

(앞쪽)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1조 및 제4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를 청구합니다.

2014 년 11월 01일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귀하

①청구인 (공제급여를 받는 자)	성명	홍두개 (인)	주민등록번호	650101-1010101	
	주소	인천 남구 구월로 17			
	전화번호	010-1234-56789			
	피공제자와의 관계	부			
	공제급여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청구인이 법적 대리인이 아닌 경우				
	②위임인	성명	학부모 또는 법적대리인		
	③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제급여를 받는 자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공제가입자	학교명	안전고등학교		
	학교장	나안전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로 12		

피공제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95-01-01
	주소	상동		
	소속	2학년 1반		

사고개요 (상세한 것은 별지에 적음)	발생일시	2014.10.01		
	발생장소	교내 복도		
	사고관련자 소속		성명	
	사고경위 및 내용	휴식시간 화장실을 가기위해 복도에서 뛰다 미끄러져 넘어져 치아가 파절됨		

청구액	요양급여	250,000	장의비	
	장해급여		보전비용	
	간병급여		위로금	
	유족급여		기타	
	합계			

구비서류	뒷면참조
------	------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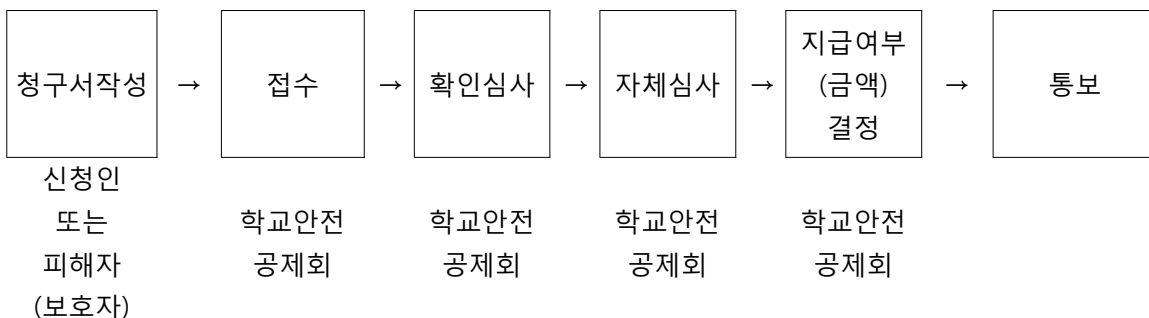
1. 청구서는 공제가입자(학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인이 피공제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청구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청구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서류 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비 고
요양급여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3. 주민등록등본	
장해급여	1. 장애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금액증명	
간병급여	1.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2. 주민등록등본	
유족급여 및 장의비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소득금액증명	
보전비용	1.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 2. 비용지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위로금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흥두개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